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8.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7. 이한동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4. 9. 30.

다. 상정일자: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0.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이한동 의원】

### 가.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해 보험·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안 제명)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변상,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 (안 제3조~제6조)

#### 다. 참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 입법예고 : 2024. 9. 20. ~ 9. 26.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조례의 개정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해 보험·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개정 타당성
  - 주민등록법 제36조1)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2)에는 주민등록 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의 업무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변상책임에 대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

1)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정에서 변상책임을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기능이 유사하여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관련 조례 현황 비교

구 분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조 례 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근 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 제36조
제·개정 현 황	2003년 제정, 이후 미정비	2004년 제정, 2016년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주요내용	업무담당공무원 정의,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및 청구·변상 등 보험 관련 내용 규정	
최저보험 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자치구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통합 운영(별표 1 참조)

○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 근거 법령이 달라서 각각 별도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목적

과 내용이 유사하여 자치법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정에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변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협가입금액을 충분히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인감·주민등록업무 보험 조례 관련 현황

(24.10.2. 기준)

연번	지역	통합여부	최저 보험가입금액
1	마 포 구	X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5천만원 이상
2	금 천 구	O	2억원 이상
3	강 동 구	O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4	송 파 구	O	1억원 이상
5	강 서 구	O	1억원 이상
6	은 평 구	O	1억원 이상
7	강 남 구	O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2억원 이상
8	노 원 구	O	1억원 이상
9	동 작 구	O	5천만원 이상
10	강 북 구	O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3억원 이상
11	구 로 구	O	1억원 이상
12	양 천 구	X	1억원 이상
13	중 구	X	1억원 이상
14	도 봉 구	X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5억원 이상
15	동 대 문 구	X	5천만원 이상
16	영 등 포 구	X	1억원 이상
17	관 약 구	X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3억원 이상
18	광 진 구	X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19	서 대 문 구	X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20	서 초 구	X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21	성 동 구	X	1억원 이상
22	성 북 구	X	1억원 이상
23	용 산 구	X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24	종 로 구	X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인감 업무 2억원 이상
25	중 랑 구	X	주민등록 업무 5천만원 이상/인감 업무 1억원 이상

[별표 2]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